

瑞山市議會議員懲戒要求의 件

審 查 報 告 書

2001. 8. 3
징계자격특별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發議日字 : 2001. 7. 23
- 나. 發議者 : 임덕재 의원의 8인
- 다. 回附日字 : 2001. 8. 3
- 라. 上程日字 : 2001. 8. 3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명노희 의원)

가. 징계 대상 의원

구 분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고북면 기포리92	최 옥 용	460224~1471716
2	대산읍 대산리 성덕빌라 A동501호	김 환 성	450110~1253516

나. 징계사유

- 1) 징계대상 의원인 최옥용 의원은 2001. 4. 19일 저녁 7시 40분경

서산시 고북면 용암리 국도상에서 있었던 안광근(남, 43세. 당시 고북파출소장)의 음주사고와 관련하여 본인이 운전자임을 주장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므로 경찰수사결과 범인도피죄로 처리(2001. 5. 2)되어 2001. 6. 25일 검찰에서 구약식 기소(벌금3백만원)처분을 받음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의원으로서 품위손상을 초래한바 이에 대하여 징계하고자 함.

- 2) 징계대상 의원인 김환성 의원은 2001. 6. 26일 대산읍 오지리, 기은리 일대에 한해가 심하여 삼성, 현대에서 급수차로 물을 공급하고 모내기를 하는 지역에 대산읍장, 대산농협조합장과 함께 방문하고 돌아오다 오후 3시 40분경 차한잔 마시자며 궁중회관 (대산 5리 이장택)에 들러 고스톱을 치다가 4시 10분경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대산 파출소의 수사결과 무혐의 훈방조치된 사항이나 서산시 게시판 등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의원으로서 품위손상을 초래한바 이에 대하여 징계하고자 함.

3. 適用法規

가.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 및 제78조

나. 서산시의회의회의규칙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비공개 회의)

5. 討論 및 少數意見 : 생략(비공개 회의)

6. 審査結果 :

가) 최옥용 의원 25일 출석정지

나) 김환성 의원 15일 출석정지

의안번호	제 219 호
의결년월일	2001. . . (제 호)

서산시의회의원징계요구의건

발 의 자	임덕재의원의외 8 인
발의년월일	2001. 7. 23.

징 계 요 구 서

의안 번호	219
----------	-----

발 의 자 : 임덕재 의원의외 8 인
발의년월일 : 2001. 7. 23.

1. 징계대상의원

구 분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고북면 기포리92	최 옥 용	460224~1471716
2	대산읍 대산리 성덕빌라 A동501호	김 환 성	450110~1253516

2. 징계사유

가. 징계대상 의원인 최옥용 의원은 2001. 4. 19일 저녁 7시 40분경 서산시 고북면 용암리 국도상에서 있었던 안광근(남, 43세. 당시 고북파출소장)의 음주사고와 관련하여 본인이 운전자임을 주장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므로 경찰수사결과 범인도피죄로 처리(2001. 5. 2)되어 2001. 6. 25일 검찰에서 구약식 기소(벌금3백만원)처분을 받음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의원으로서 품위손상을 초래한바 이에 대하여 징계하고자 함.

나. 징계대상 의원인 김환성 의원은 2001. 6. 26일 대산읍 오지리, 기은리 일대에 한해가 심하여 삼성, 현대에서 급수차로 물을 공급하고 모내기를 하는 지역에 대산읍장, 대산농협조합장과 함께 방문하고 돌아오다 오후 3시 40분경 차한잔 마시자며 궁중회관 (대산 5리 이장택)에 들러 고스톱을 치다가 4시 10분경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대산파출소의 수사결과 무혐의 훈방조치된 사항이나 서산시
게시판등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의원으로서 품위손상을 초래한바 이에 대하여 징계하고자 함.

3. 관련법규 및 자료

1)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 및 제78조

나. 서산시의회회의규칙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2) 관련자료

가.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교통63320-2634호)

나. 의회게시판 게시내용

②地方議會議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團體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去來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施設 또는 財産의 讓受人 또는 管理人이 될 수 없다.

第34條 (議員의 義務) ①地方議會議員은 公共의 이익을 우선하여 良心에 따라 그 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地方議會議員은 清廉의 義務를 지며, 議員으로서의 品位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地方議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地方自治團體·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이익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일선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4條의2 (議員逮捕 및 確定判決의 통지) ①逮捕 또는 拘禁된 地方議會議員이 있을 때에는 관저搜查機關의 長은 지체없이 議長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4·3·16>

②地方議會議員이 刑事事件으로 公訴가 제기되어 그 判決이 확정된 때에는 各급 法院長은 지체없이 당해 議長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新設 99·8·31>

(本條新設 91·12·31)

第3節 權 限

第35條 (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 <改正 94·3·16. 99·8·31>

1. 條例의 制定 및 改廢
2. 豫算의 審議·확정
3. 決算의 승인
4. 法令에 規定된 것을 제외한 使用料·手數料·分擔金·地方稅 또는 加入金の 賦課와 徵收
5. 基金의 設置·運用
6.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財産의 취득·처분
7.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公共施設의 設置·처분
8. 法令과 條例에 規定된 것을 제외한 豫算의 義務負擔이나 權利의 포기
9. 請願의 受理와 처리
10. 外國 地方自治團體와의 交流協力에 관한 사항
11. 기타 法令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사항

第10節 秩序

第74條 (會議의 질서유지) ①地方議會의 議員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會議場에서 이 法 또는 會議規則에 違背되는 發言 또는 행위를 하여 會議場의 秩序를 亂하게 한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이를 警告 또는 制止하거나 그 發言의 取消을 命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命에 응하지 아니한 議員이 있는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그 議員에 대하여 當日의 會議에서 發言을 금지시키거나 退場시킬 수 있다.

③議長 또는 委員長은 會議場이 騷亂하여 秩序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會議을 中止하거나 散會를 宣布할 수 있다.

第75條 (侮辱등 發言의 금지) ①地方議會의 議員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他人을 侮辱하거나 他人의 私生活에 대한 發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侮辱를 당한 議員은 侮辱를 加한 議員에 대하여 地方議會에 그 懲戒를 요구할 수 있다.

第76條 (發言妨害등의 금지) 地方議會의 議員은 會議중에 暴力을 행사하거나 騷亂한 행위를 하여 他人의 發言을 방해할 수 없으며, 議長 또는 委員長의 許可없이 演壇이나 壇上에 登壇하여서는 아니된다.

第77條 (傍聽人에 대한 團束) ①傍聽人은 議案에 대하여 可否를 表明하거나 騷亂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議長은 會議場안의 秩序를 방해하는 傍聽人의 退場을 命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警察官署에 引渡할 수 있다.

③傍聽席이 騷亂할 때에는 議長은 모든 傍聽人을 退場시킬 수 있다.

④傍聽人에 대한 團束에 관하여 第1項 내지 第3項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會議規則으로 정한다.

第11節 懲戒

第78條 (懲戒의 사유) 地方議會는 議員이 이 法 또는 會議規則에 違背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議決로써 이를 懲戒할 수 있다.

第79條 (懲戒의 요구) ①地方議會의 議長은 第78條의 規定에 의한 懲戒對象 議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소관 委員會 또는 本會議에 회부한다.

②第7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議員에 대하여 侮辱를 당한 議員이 懲戒를 요구할 때에는 懲戒事由를 기재한 요구서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懲戒要求가 있을 때에는 議長은 이를 소관 委員會 또는 本會議에 회

(주 1)

부한다.

第80條 (懲戒의 종류 및 議決) ①懲戒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公開會議에서의 警告
2. 公開會議에서의 謝過
3. 30일 이내의 停職징계
4. 除名

②除名에는 在籍議員 3분의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81條 (懲戒에 관한 會議規則) 懲戒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會議規則으로 정한다.

第12節 事務機構와 職員

第82條 (事務處등의 設置) ①市·道 議會에는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務處를 둘 수 있으며, 事務處에는 事務處長과 職員을 둔다. <改正 91·12·31>

②市·郡 및 自治區 議會에는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務局 또는 事務課를 둘 수 있으며 事務局·事務課에는 事務局長 또는 事務課長과 職員을 둘 수 있다. <改正 91·12·31>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處長·事務局長·事務課長 및 職員(이하 이 節에서 “事務職員”이라 한다)은 地方公務員으로 補한다. <改正 91·12·31>

第83條 (事務職員의 定員과 任命) ①地方議會에 두는 事務職員의 定數는 條例로 정한다.

②事務職員은 地方議會의 議長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命한다. <改正 94·3·16>

第84條 (事務職員의 職務와 身分保障등) ①事務處長·事務局長 또는 事務課長은 議長의 命을 받아 議會의 事務를 처리한다. <改正 91·12·31>

②事務職員의 任用·報酬·服務·身分保障·懲戒등에 관하여는 이 法에 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地方公務員法을 適用한다.

第6章 執行機關

第1節 地方自治團體의 長

第1款 地位

(후 46)

서 산 경 찰 서
(041)64-4972

교 통 : 63320 - 2634


2001. 5. 2

수 신 : 서산시의회의장

발 신 : 서산경찰서

제 목 :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

사범경찰관

경위 황해상 

귀 의회 의원에 대한 범인도피 피의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의거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제2166호	
죄 명	범인도피	
피 의 자	소 속 및 직 위	서산시의회 의원
	주 민 등 록 번 호	460224-1471716
	성 명	최 옥 용 (崔 玉 鏞)
처 리 상 황	년 월 일	2001. 4.
	내 용	기소의견으로 송치
비 고	<p>위 피의자는 2001. 4. 19 19:40경 서산시 고북면 용암리 국도상에서 피의자 안광근(남,43세 당시 고북파출소장) 이 술에 취해 중남45나4152호 레간자 차량을 운전다가 인적,물적피해의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정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도피시킬 목적으로 자신이 범인 정황을 합으로서 진범을 도피시키며 체포를 곤란케 하였던 자임.</p> <p>이건과 관련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사목 61100 ~ 1322

2001 . 6 . 25

분류기호 :

수 신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발 신 :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
 제 목 : 귀(부) 직원 최옥용

신응석
 검사 :



다음과 같이 처분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 73조 제 3항) 에 의거

에 대한 사건이
 제 83조 제 3항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2001 형제 3235 호
피 성 명	최 옥 용
의 주민등록번호	460224 - 1471716
자 소속및직위	서 산 시 의 회 기 타 공 무 원
죄 명	범 인 도 피
처 년 월 일	2001 년 6 월 25 일
분 결 과	구 약 식
피 의 사 실 요 지	별 첨 과 갈 음
공 소 부 제 기 이 유	해 당 없 음
고 소 인 성 명	해 당 없 음
비 고	귀 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사건이 위와 같이 처분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 83조 제 3항 (지방공무원법 제 73조 제 3항) 에 의거 통보 하오니 적의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범죄사실

1)피의자는 서산경찰서에 재직중인 경찰공무원(경위)으로 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 자기소유 충남45다4152호 레간자승용차를 운전하였던자이고, 2)피의자는 서산시의회 의원으로 재직중인 자인바,

가. 2001. 4. 19 19:40경 서산시 고북면 용암리 소재 SK주유소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측정수치0.053+위드마크계산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해미에서 고북방향 시속 약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타가 좌측 용암리 2구 쪽으로 좌회전 하신 위해 일시정지중이던 충남31부8221호 레간자 승용차 뒤밤바부분을 피의차량의 앞밤바부분으로 추돌,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운전자 이삼숙(여,37

제)에게 경추 5번,6번 추간판 팽윤증상으로 요척3주간, 동승한 피해자도 딸 김연형(여,9세)에게 흉부외상으로 요척10일간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등 조치없이 도주하고,

나. 위와 같은 추돌로 인하여 피해차량 브레이크 교환비용 1,297,830원 상당이 잘못을 손피해자로 운전자로서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2)피의자 죄목용은

1)피의자가 위와 같은 인적,물적피해를 야기한 진범인 정을 알고 있음(주범)에도 이를 도피시킬 목적으로 교통사고 신고를 절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경찰서 교통과출소 소속 순경 최영호등에게 "이 사고는 내가 운전하다가 일어났다"라 하여 교통사고 진범인양 나서 병과출소에서 그의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하고자 당일 20:50경부터 10여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측정거부로 발부되고 이후 조사과정에서도 시종 이 사고는 자신이 낸 사고처럼 진술함으로써 교통사고 진범인 1)피의자를 도피시켜 체포를 곤란케 한 것이다.

위 사건 1)피의자의 가항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에, 나항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동법 제106조, 동법 제107조의2 제1호, 동법 제41조 제1항, 동법 제108조에, 2)피의자의 행위는 형법 제151조 제1항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정 수사한바, 현장상황, 심황조사결과 참고인 김주호 등 정선호, 피해자 진술내용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용, 피해진단서 및 전격서 내용 피의자본인의 백경 모두 무관하여 감정충분하나, 1)피의자의 행위중 '물적피해를 구한' 도로교통법 제108조4은 피의자와 합의를되어 처벌되지 않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거 불기소(공소권위율)처분 하시고, 나머지 죄명에 관하여는 모두 기소하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게시판

◆ 작성자 : 대산의 민주시
민

◆ E-mail :

최종수정일 : 2001/06/27(15:20)

시의원 읍장 조합장의 힘이 대통령보다 썬가?

어제 6월 26일 대산읍장, 시의원, 조합장이 업무시간에 고스톱을 치다가 경찰에 단속
되었다는 이야기가 띄워 졌었다. 그러나 서산시청에 의해 임의로 글이 지워 졌다.
명백한 사실인 이사건을 사실 확인 없이 삭제했다는 것은 시청이 조직적으로 사건 은
폐를 하겠다는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 또한 읍민에게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할 사람
들이 조직적으로 로비를 한 결과이며 대통령도 못하는 개인의 의사 표현을 임의로 삭
제하는 짓을 한 것이다.

나는 제안 한다. 서산시는 사실 확인을 정확히하고 글을 자율 태면 지워라. 대산 파출
소에 업무일지가 있을 것이고 경찰서에 보고한 바가 있을 것이다

만약 이글을 또다시 삭제한 다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대통령직속
의 사정기관에 은폐사실을 알리고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 할 것이다

또한 대산의 김모시의원, 박모 읍장, 이모조합장은 들으라! 지금이라도 사실을 밝히
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수는 없다!



자유게시판

◆ 작성자 : 서산 주부

◆ E-mail :

최종수정일 : 2001/06/27(15:53)

시의원 읍장 조합장의 힘이 대통령보다 쎄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시청과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연일 부끄러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그리고 지역의 유지가 도대체 근무시간에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대산읍장,대산을 대표하는 시의원,대산농협조합장
 우리 서산시민들은 진실로 당신 같은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나도 화가 납니다.
 주부의 힘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인터넷을 통해 당당하게 밝히십시오.
 그리고 사실이면 깨끗하게 신변을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배울 까 겁이 납니다. 처리를 지켜볼 것입니다.

